

행정쟁송법

【문제 1】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은 지능형 고용촉진 특화사업을 선도할 기업을 발굴·홍보하는 사업을 기획하였다. 이에 장관은 A법률에 따라 전국 최우수 1개 기업을 선정하여 5년간 특별지원금 30억 원의 지급과 함께 금융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지능형 고용선도 혁신기업 선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공모하였다. A법률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이 사건 사업 선정자의 선정기준·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법률 시행규칙」

제5조(선정기준 및 절차) ① 지능형 고용선도 혁신기업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본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지능형 사업 부문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일 것

2. ~ 5.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능형 사업 부문 일자리의 전문성, 기술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체계, 지능형 인프라 근무환경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2차 본심사를 거쳐 최종 1개 기업을 지능형 고용선도 혁신기업으로 선정한다.

이 사건 사업의 공모에 甲과 乙 등 다수의 기업이 응모하였고, 장관은 그 중 甲을 지능형 고용선도 혁신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십시오. (50점)

물음 1) 이 사건 사업에 응모한 乙은 당해 연도 지능형 사업 부문의 상시근로자 수가 40명에 불과하여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그러나 乙은 A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을 고려할 때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라 주장하며 甲에 대한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乙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20점)

물음 2) 한편, 이 사건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甲은 선정 후 1년이 경과했을 무렵 경영상의 이유로 자신의 기업을 丙에게 전부 매각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A법률에 따르면 기업양도의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선정자 지위는 장관의 명의변경 승인을 통해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수인 丙은 장관에게 선정자 지위의 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장관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문항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문항임) (30점)

(1) 丙은 명의변경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명령재결을 하였으나, 장관은 최초 거부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명의변경 신청을 다시 거부하였다. 丙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직접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2) 丙은 명의변경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인용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발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할법원은 甲의 소를 각하하였다. 거부처분취소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고려하여 각 하판결의 논거를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 甲 건설회사(이하 ‘甲’이라 함)에 고용된 작업자가 건설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및 통보권한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위 사망사고를 산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라 매년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이하 ‘만인율’이라 함)을 甲에게 통보하였다.

$\text{※ 사고사망만인율(\%)} = \text{사고사망자 수} \times 10,000 / \text{상시근로자 수}$
--

만인율 수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에서 매년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액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 따라 각각 감점으로 반영되게 된다. 이것의 직접 적용기간은 매년 7. 1.부터 1년간이지만, 최근 3년간 수치의 가중평균 구조를 통하여 그 불이익은 이후 수년간 누적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공단이 산출한 만인율 점수를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달청장의 지침인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역시 건설업 평균 대비 배율에 따라 건설안전 심사 점수가 자동 산출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만인율이 반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년간 만인율을 0%로 유지해 오던 甲은 그 비율산정의 모수(母數)인 상시근로자 수가 적기 때문에 단 1명의 사망사고로도 이 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 甲은 위 통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가능성을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 甲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2022년 A공단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온 자이다. 乙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6년 2월 퇴직하고, 아직 퇴직연금 지급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A공단 직원으로 다시 임용된 자이다. 2025년 12월경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A공단이 연금일부 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단은 甲에게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이후 매월마다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은 공단에 퇴직연금 중 일부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甲이 근무하는 A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에 의하여 연금일부 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한편,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으려는 乙은 공단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공단은 乙이 A공단에 임용되었음을 이유로 퇴직연금 중 2분의 1을 감액하는 연금지급결정을 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물음 1) 甲은 일부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받고자 연금지급청구소송 대신에 공단의 지급거부회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소송의 적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乙은 공단이 퇴직연금 중 2분의 1을 감액하는 연금지급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서 연금지급대상자 지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乙의 가처분신청 허용 여부를 설명하시오. (15점)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